

취업규칙 개정에 이견 없이 동의함

2016.2.1

케이티 노동조합
위원장 정 윤 모 (인)



취업규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	비고
제8조(휴직기간)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①~④ <생략> ⑤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<u>사장</u>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제8조(휴직기간) 휴직기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. ①~④ <생략> ⑤ 제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 다만, <u>회장</u>이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안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	현행화 (인사규정 제 21 조)
제18조(질서유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직원이 소속기관이 아닌 회사내의 타기관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및 정당한 출입목적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.	제18조(질서유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직원이 소속부서가 아닌 회사내의 타부서에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및 정당한 출입목적 제시하여 시설관리책임자의 출입승인을 받아야 한다.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9 조)
제19조(직무이탈의 금지) ① 직원은 소속기관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 <생략> ③ <생략> ④ 직원은 소속기관장 또는 상급자가 휴가(외출, 조퇴, 결근, 지참 등을 포함)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19조(직무이탈의 금지) ① 직원은 소속부서장의 승인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. ② <생략> ③ <생략> ④ 직원은 소속부서장 또는 복무관리자가 휴가(외출, 조퇴, 결근, 지참 등을 포함)기간중 조직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특별히 금지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6 조)

된다.	니된다.	
제20조(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직원은 법령·회사의 제규정으로 인정되거나 회장 또는 소속기관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제20조(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 등의 금지) ① <생략> ② <생략> ③ 직원은 법령·회사의 제규정으로 인정되거나 회장 또는 소속 <u>부서</u>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이외의 일을 목적으로 한 집단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8 조)
제23조(근무시간) ① <u>직원의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8시간으로 하되, 9시에 시업하여 18시에 종업함을 원칙으로 한다.</u> ② <생략>	제23조(근무시간) ① <u>직원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주5일 40시간,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며, 직원의 통상적인 근무시간은 09:00부터 18:00까지로 한다.</u> <u><좌동></u>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13 조)
제24조(<u>시간외</u> 및 야간근무) ① <u>각급기관의</u>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<u>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</u>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시간외근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 ② <u>각급기관</u> 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야간근무(22:00~익일 06:00)	제24조(<u>연장</u> 및 야간근무) ① <u>각 부서</u> 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<삭제>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<u>연장</u> 근무를 수행케 할 수 있다. ② <u>각 부서</u> 의 장은 업무형편상 필요한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야간근무(22:00~익일 06:00)를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19 조)

를 수행케 할 수 있다. 다만, 여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시간외</u>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	수행케 할 수 있다. 다만, 여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<u>연장</u>근무 또는 야간근무에 대하여는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.	
<신설>	제26조의2(휴무일) ① 상시일근자의 휴무일은 토요일로 한다. ② 교대근무자에 대하여는 1주일에 1일을 휴무일로 지정하여 부여한다. ③ 각 부서의 장은 제25조 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휴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있다.	휴무일 정의 신설 (복무관리지침 제 26 조)
제27조(휴일근무) ①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<u>제27조</u>에 의한 <u>휴일</u>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<u>휴일근무</u>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여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휴일</u>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거나 보수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	제27조(휴일근무) ① <u>각 부서의</u> 장은 업무형편상 또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<u>제26조</u>에 의한 <u>휴일</u> 또는 <u>제26조의2</u>에 의한 <u>휴무일</u>인 경우에도 소속직원에 대하여 <u>근무</u>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여직원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<u>휴일</u> 또는 <u>휴무일</u>에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는 정상근무일에 휴무케 하거나 보수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	현행화 (오자수정, 복무관리지침 제 24 조) 휴무일 추가
제28조(휴가)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	제28조(휴가) 직원에게 부여하는 유급휴가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.	안식년휴가제 도입

1~7. <생략>	1~7. <좌동> 8. <u>안식년휴가</u>	(복무관리지침 제 27 조)
제34조(당직)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각급기관</u> 의 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.	제34조(당직)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, 도난 등 각종 사고의 예방과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극소화하고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<u>각 부서</u> 의 장은 직원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.	현행화 (복무관리지침 제 44 조)
제 38 조(<u>보수기간 계산</u>)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 개월로 한다. 다만, 수당의 계산기간은 따로 정한다.	제 38 조(<u>보수의 계산기간</u>) 보수의 계산기간은 당해 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1 개월로 한다. 다만, 수당의 계산기간은 따로 정한다.	문구 조정 (보수규정 제 8 조)
제56조(경고와 주의) <u>각급기관</u> 의 장은 직원의 경미한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로서 동일한 징계사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계고할 수 있다.	제56조(경고와 주의) <u>각 부서</u> 의 장은 직원의 경미한 과실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고 또는 주의로서 동일한 징계사유가 재발하지 아니하도록 계고할 수 있다.	현행화 (인사규정 제 39 조)